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12.

특 허 청
(정보고객정책과)

법제처 심사 前

1. 개정이유

특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며,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감면 조문의 단순·명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디자인보호법 개정(“22.2.18 시행)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 반영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산사태 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재난을 당한 개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안 §13①, ②)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수수료 등의 추징 및 제재를 통해 부당한 감면사례 발생방지(안 §13조의2 ①, ②, ③ 신설)

나.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 확대(안

§2②4, §3②4, §4②4, §5②7, 별표 6)

- 1)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질권 설정 등록 비용 및 담보 지식재산 매입·활용사업을 통한 특허매입·유지 비용 등 경감(안 §2②4, §3②4, §4②4, §5②7)
- 2) 특허청의 중점 정책지원 대상(직무발명보상 우수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식재산역량 향상을 지속 유인하기 위해 연차료 감면 확대(별표 6)

다.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 적용 (안 §5 ①1.라목 신설)

- 1) 서면출원시 지정상품을 고시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전자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제도 적용 (72천원 → 66천원)
- 2) 지정상품의 정확한 고시명칭 사용을 유도하여 거절이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심사지연 요소를 해소

라. 납입고지서 간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 도모 (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 1) 수수료 감면 및 전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차감분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납입할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 방식을 변경
- 2) ‘고객 전용 입금 계좌’ 란을 신설하여 고객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쉽고 편리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복잡한 수수료 감면 조문의 단순·명료화로 권리자 등의 법령 이해 제고(안 §7①, ②, ③, ④, ⑤을 개정 → 별표 4, 5, 6, 7)

- 1)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규정된 현행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로 정리
- 2) 이미 제출한 감면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범위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000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000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중전의 제4호) 본문 중 “특허권, 특허권”을 “특허권”으로, “설정등록 또는”을 “설정등록료 및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중전의 제4호) 본문 중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권”으로, “설정등록 또는”을 “설정등록료 및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실용신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중전의 제4호) 본문 중 “디자인권, 디자인권”을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 또는”을 “설정등록료 및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의2(중전의 제7호) 본문 중 “상표권, 상표권”을 “상표권”으로, “설정등록 또는”을 “설정등록료 및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호”를 “제7호 및 제7호의2”로 한다.

7.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 매건 2만원. 다만, 202

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을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 별표 4와 같다.
2.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별표 5와 같다.
3.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 별표 6과 같다.

제7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규칙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제2항”을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로,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면제 또는”을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의”로, “(제1항에 따른 면제의)”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각 호”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으로, “면제 또는 감면의”를 “감면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해당하는”을 “별표 4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을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조제4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8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제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7조제8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난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83조제2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하여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제재) ① 특허청은 특허법 제83조제4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금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출원후 등록결정전 또는 등록결정 이후에 확인한 경우 보정요구서 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한 내용과 징수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③ 특허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디자인권자가 하는 특허출

원·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특허권·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디자인권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년간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우선심사의 신청, 출원인변경신고,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 질권의 설정등록 신청을 하거나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질권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표등록출원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질권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질권의 설정을 신청하는 경우의 질권의 설정등록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상표등록출원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상표등록출원료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특허(등록)료·수수료·등록면허세·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송되는 특허(등록)료·수수료·등록면허세·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 1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 [별표 4]

[별표 4]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면제대상	대상기준	면제대상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1.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10건)
2.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및 가족	
5.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6.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급자	
9.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10.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	
11. 병(兵),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환복무 수행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兵),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2.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인 경우로 한한다)	출원인변경신고료, 이전등록료

비고

-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을 하거나,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위 표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

수료를 면제한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는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적용한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권리유형별(특허·실용신안·디자인)·절차별(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연간 감면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4.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
5. 위 표 제12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출원인변경신고료와 이전등록료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의 면제는 위 표 제12호의 자가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위 표 제12호의 출원인변경신고료 및 이전등록료의 면제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같은 표 제12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가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면제를 적용한다.
8. 이 규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면제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재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2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상시적 감면대상 [별표 5]

[별표 5]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
개인	1.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100분의 85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20건)	100분의 50
	2. 65세 이상인 자		
	3. 그 외 개인 (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외)	100분의 70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20건)	
4. 중소기업		100분의 70	
5. 공공연구기관		100분의 50	
6. 전담조직			
7. 지방자치단체			
8. 기술신탁관리기관		—	
9.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		100분의 50	—
10. 중견기업		100분의 30	100분의 30 (4년분~9년분)

비고

-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을 하거나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위 표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위 표 제9호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인은 제외한다)은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감면을 적용한다.

3. 개인의 권리유형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절차별(출원, 심사청구, 권리의 설정등록) 연간 감면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출원 건수가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권리에 대한 출원인 경우 출원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위 표 제4호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위 표 제5호의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
6. 위 표 제6호의 전담조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말하여, 법인인 경우로 한한다.
7. 위 표 제7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위 표 제8호의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을 말하며, 4년분부터의 특허료·등록료의 감면은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위 표 제9호의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과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위 표 제10호의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11.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2.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가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14. 이 규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비고 제11호 및 제12호의 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재확인が必要な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3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대상 [별표 6]

[별표 6]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대상(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			구분	
			감면율	감면기간
특허료 · 등록료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100분의 70 (4년분~9년분)	납입개시일이 2026년 2월 28일까지인 건
	2.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100분의 50 (4년분~9년분)	
	4.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5. 은행		100분의 50	권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는 경우
	6.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에 한한다.)		면제	납입개시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건
우선심사 신청료 (연간 2건)	개인	7. 별표 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 지 특허출원의 우선심 사를 신청하는 경우
		8.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100분의 85	
		9. 65세 이상인 자		
		10. 그 외 개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제외)	100분의 70	
	11. 중소기업		100분의 50	
	12. 공공연구기관			
	13. 전담조직			
	14. 중견기업		100분의 30	
우선심사 신청료 (연간 10건)	15. 중소기업		100분의 70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16.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특허권·실용신안권에 관한 수수료에 한한다.)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건

비고

1. 위 표의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의 기준은 별표 5 비고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한다.
3. 위 표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며, 연간 신청건수 산정에 있어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4. 위 표 제15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며, 연간 신청건수 산정에 있어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5.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6. 위 표 제2호 및 제4호의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7. 위 표 제5호의 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가. 질권의 행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다. 신탁의 설정

8. 위 표 제6호 및 제16호의 전담기관은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1항,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관(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의 면제는 같은 법 제32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 위 표 제16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이전등록료와 질권의 설정등록료는 이 규칙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의 면제는 제16호의 자가 권리를 이전받거나 질권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붙임 4

재난 발생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별표 7]

[별표 7]

재난 발생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제13조제2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
개인	1.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100분의 90	100분의 70
	2. 65세 이상인 자		
	3. 개인 (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외)	100분의 80	
4. 중소기업		100분의 80	
5. 공공연구기관		100분의 70	
6. 전담조직			
7. 지방자치단체			
8. 기술신탁관리기관		—	
9.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		100분의 70	—
10. 중견기업		100분의 50	100분의 50 (4년분~9년분)
1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100분의 80 (4년분~9년분)
12.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00분의 70 (4년분~9년분)
1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14.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15. 은행			100분의 70
16. 기타		100분의 30	100분의 30

비고

1. 위 표의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기술신탁관리기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 중견기업은 별표 5 비고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은행의 기준은 별표 6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2.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을 하거나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위 표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3. 위 표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선포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선포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4.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제8조제6항에 따른 만료일은 제외한다)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5.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제8조제8항 단서 규정,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만료일은 제외한다.)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제8조제11항에 따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위 표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면은 별표 6 제1호부터 제5호의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의 자가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한 요금 고지를 위해 본 안내서를 송부드립니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특허(등록)료에 금액 가산 또는 차감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고지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최종 납부금액이 '₩0원' 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Line(특허료)이나 서면(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 - - - -		
출원·등록·심판번호	- - -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원	등록면허세	원
	감면사유 있을시 감면 적용된 금액	지방교육세	원
감면사유		인 지 세	원
		차감금액(전자등록증)	- 원
최종 납부할 금액	원		
정상납부기일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납부자 성명			
주 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

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 - - - -		
출원·등록·심판번호	- - -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원	등록면허세	원
	감면사유 있을시 감면 적용된 금액	지방교육세	원
감면사유		인 지 세	원
		차감금액(전자등록증)	- 원
최종 납부할 금액	원		
정상납부기일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

*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고객 전용 입금 계좌

* 납부에 이미 이용한 입금 계좌는 재이용할 수 없음

* 아래의 계좌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납부 요망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참고] 요금의 종류

가. 특허료·등록료

나. 수수료 : ① 출원료 ② 심사청구료 ③ 심판청구료 ④ 국제출원수수료 ⑤ 보정료
⑥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 그 밖의 수수료

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함]

• 상표권 설정 및 갱신등록 : 9,120원(등록면허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등록면허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라.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 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u> <u>설정등록료 : 매건 2만원. 다만, 2</u> <u>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u> <u>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u> <u>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건</u> <u>마다 1만원으로 한다.</u>
4. <u>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u>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u>설정등록 또는 처분의</u>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u>4의2. 특허권-----</u> <u>설정등록료 및 특허권, 특허권의</u> <u>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u> <u>목적으로 하는 ---. -----</u> ----- ----- ----- ----- ----- -----.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u>제4호</u> 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5. ----- <u>제4호 및 제4호의2-----</u>

이전등록료

가. ~ 라. (생 략)

6. ~ 10. (생 략)

③ (생 략)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생 략)

② 「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
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
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
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
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
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
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

가. ~ 라. (현행과 같음)

6.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권의 설정등록료 :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
동담보인 실용신안권이 6건을 초
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건마다 1만원으로 한
다.

4의2. 실용신안권-----
설정등록료 및 실용신안권, 실용
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 ---

-----.

5. ----- 제4호

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 라. (생략)

6. ~ 10. (생략)

③ (생략)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4.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및 제4호의2-----

가. ~ 라. (현행과 같음)

6.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의2. 디자인권-----
설정등록료 및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 -----

-----.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 라. (생략)

6. ~ 8. (생략)

③ (생략)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업무표장등록출원료·증명표장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 ~ 다. (생략)

<신설>

2. 삭제

5. ----- 제4호
및 제4호의2-----

가. ~ 라.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 13. (생략)

②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

7.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제6호에 따른 사용권 또는 제7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가. ~ 라. (생략)

9. ~ 13. (생략)

③ (생략)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3. ~ 13.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7의2. 상표권-----
설정등록료 및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 -----

-----.

8. ----- 제7호 및 제7호의2-----
가. ~ 라. (현행과 같음)

9.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는 사람(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호와 같다.

1.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 별표 4와 같다.
2.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

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면 : 별표 5와 같다.

3.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 별표 6과 같다.

<삭 제>

5. 삭 제

6.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삭 제>

7.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삭 제>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 100분의 50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

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
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
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
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
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경우
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
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4.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
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
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
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
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
분의 70

5.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실
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
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

의 50

6.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
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
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출
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
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8.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
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
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
인등록료의 100분의 85. 다만, 개
인이 「특허법」·「실용신안
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
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
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9.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

의 30

9의2.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9의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경우(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9의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는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가. 질권의 행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다. 신탁의 설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는 자: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나. 개인 또는 중소기업: 우선심

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

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한다.

다.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

직: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

의 50

라. 중견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

11.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

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제9호 및 제9호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말일까지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중견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100분의 70(중소기업만 해당한다)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④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

<삭 제>

<삭 제>

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② -----

-----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

----- 특허료
·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

-----.-----.

1.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

-----.
⑤ 제3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나. (생략)

2.·3. (생략)

② 삭제

③·④ (생략)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⑦ (생략)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가.·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제7조제3항 및 제4항-----
-.

⑨ -----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제4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사태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감면할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종류, 감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제7조제5항-----

-----.

제13조(재난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83조제2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하여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3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제재)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83조제4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특

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금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출원후 등록결정전 또는 등록결정 이후에 확인한 경우 보정요구서 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한 내용과 징수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디자인권자가 하는 특허출원·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특허권·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디자인권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년간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